

한-EFTA 원산지증명서

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

(제 9 조의 2 제 1 항제 1 호 관련)

<p>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</p>	<p>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(customs authorization No.....¹⁾)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²⁾ preferential origin.</p> <p>.....³⁾</p> <p>(Place and date)</p> <p>.....⁴⁾</p> <p>(Signature of the exporter,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)</p> <p>.....⁵⁾</p> <p>(Remarks)</p>
<p>작성방법</p>	<p>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.</p> <p>1)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.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)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 단위 부호를 적습니다.</p> <p>① 대한민국: KR ② 아이슬란드: IS ③ 노르웨이: NO</p> <p>④ 스위스(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): CH</p> <p>3)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. 다만,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 <p>4)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, 서명을 합니다. 다만,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 <p>5)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. 역외가공된 물품(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)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.</p> <p>"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(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) have been applied"</p>